

2027년 관세사 1차 시험 대비 개정 공지(1)

윤준필 관세사

1. 중동전쟁으로 인한 과세운임 결정 예외사항 신설(교재 p61) - 5/8 개정

개정 전	개정 후
(6) 수입항까지의 운임·보험료 [법 제30조 제1항 제6호] ...(중략)... 1) 운임 등의 결정 [시행령 제20조] ① ~ ③ (생략)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상기 ①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(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“선박회사 등”이라 한다)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. ㉠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 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㉡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(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㉢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⑤ (생략) ⑥ <u>상기 ③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</u>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<u>상기 ③에</u>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(6) 수입항까지의 운임·보험료 [법 제30조 제1항 제6호] ...(중략)... 1) 운임 등의 결정 [시행령 제20조] ① ~ ③ (생략)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(하기 ㉠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상기 ①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(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“선박회사 등”이라 한다)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의 기준, 적용기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. ㉠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 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㉡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(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㉢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㉣ 전쟁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운송경로·운송일정 등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 ⑤ (생략) ⑥ <u>상기 ③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</u>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<u>상기 ③에</u>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2.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취소 후 재공인 제한규정 신설(교재 p634 및 p753) - 8/11 개정

개정 전	개정 후
8.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취소[법 제255조의5]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, 양수,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	8.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취소[법 제255조의5] (1)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취소 사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, 양수,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(2) 공인취소 후 재공인의 제한 <u>상기(1)의 ①(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공인·갱신받은 경우) 및 ⑥(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.</u>
22. 청문[법 제328조]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① ~ ⑨ (생략) ⑩ 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⑪ 제327조의3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·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	22. 청문[법 제328조]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① ~ ⑨ (생략) ⑩ 제255조의5 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⑪ 제327조의3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·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

(이상)